



# 국내 폐기물 관련 정책에 대하여

## About Packaging-waste Policy

홍 준 석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장

폐기물관리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폐기물이 환경에 주는 부하를 줄임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발생된 폐기물을 후처리하는 개념의 단순 처리 단계에 앞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prevention)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그래도 남는 폐기물은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폐기물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쓰레기의 30%정도가 줄어들고 재활용은 늘었으나 포장폐기물은 매년 4.4%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연간 6백43만톤이 발생되어 생활쓰레기의 3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포장폐기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포장은 일반 상품과 달리 자체적인 상품성이 없어 사용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폐기물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거나 불필요하게 과대포장된 상품 등이 우리 주변에 많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상품보호, 취급의 용이, 판매촉진 등 포장의 기본기능 외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 친환경적·경제적인 실용적 포장재 개발 중요

그 예로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의 “환경마케팅 지침”에서 규정했듯이 ① 무게·부피·독성의 최소화 ② 분해성 ③ 퇴비화 가능성 ④ 재활용성 등 포장재의 친환경적인 요소와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제성 등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OECD 등 선진국에서는 포장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각국이 설정한 포장기준은 새로운 무역장벽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3년 8월부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에 의하여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 과대포장을 규제하고 재활용이 곤란한 포장재의 사용 등을 억제하여 왔다.

1999년 2월에는 과대포장규제대상 상품을 확대하고 과대포장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 당해 제품 제조·수입자에게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제출토록 하는 ‘포장검사명령제’와 포장의 겉면에 포장공간 비율·재질·횟수 등을 표시하여 제품의 출시전에 포장기준 적합여부를 사전 확인하

도록 하는 ‘포장표시권장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포장기준 위반시에는 3개월간의 이행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강제력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과대포장에 대한 시민감시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포장기준 위반상품을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시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2002년부터는 포장폐기물에 대한 제품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소재생산자, 포장재 사용자, 지방정부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선진국형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의 입안과 더불어 포장업계에서도 환경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선진국의 포장폐기물 규제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적이면서도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포장재의 개발과 사용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ko